

국유재산 매입대금 분할 납부신청서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20일
------	-----	------	-----

신청인	성명	생년월일
	주소	전화번호

신청 내용

재산의 표시			신청면적 (㎡)	신청사유	분납형식	비고
소재지	지목	지적(㎡)				
					()년 분납	
					()년 분납	
					()년 분납	
					()년 분납	

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5항(제39조의10제1항)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(제44조의9제1항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위 재산의 매입대금을 분할납부하고자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귀하

첨부서류	없음	수수료 없음
------	----	-----------

처리절차	
※ 매입대금은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(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8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)에 해당하는 경우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.	
신청인	처리기관 관리청 및 권한의 위임·위탁을 받은 자(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한국자산관리공사·한국토지공사)
분할납부신청서 작성	접수 검토 분할납부 결정 매매계약서(분할납부) 작성
교부	